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 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따른 재작 성 방법의 적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7. 11. 23.

저작권

국제회계기준(IFRSs) 및 부속 출판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발표한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5 IFRS Foundation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국제회계기준재단(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 IFRS Foundation) 및 이 출판물의 저작자와 출판자는, 이 출판물에 의거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은 자의 부주의 등 여하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제회계기준(IAS) 및 해석서(Interpretations)를 포함하는 국제회계기준(IFRSs)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s)의 정본은 IASB가 발표한 영문판입니다. 사본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출판 및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국제회계기준재단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이 없이, 이 출판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번역, 재인쇄, 재출간 또는 전자, 기계 또는 기타의 방법(복사와 리코딩을 포함한 정보저장과 검색의 방법으로서 알려진 것과 이후 개발될 것을 포함)에 의한 형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재단의 동의 하에 국제회계기준과 이 출판물에 포함된 관련 문서들의 한국어 번역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에 대한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게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은 국제회계기준재단이나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3층, 04513, 전화: +82 (0)2 6050-0150, 팩스: +82 (0)2 6050-0170, 이메일: webmaster@kasb.or.kr, 홈페이지: www.kasb.or.kr

국제회계기준재단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의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사용과 관련하여, 한국어로 구성된 일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 또는 채택한 번호가 매겨진 모든 국제회계기준(IAS) 및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의 본문,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나 상설해석위원회(SIC)가 발표한 해석서의 본문(이하 '기준서 본문')으로 구성됩니다.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서 본문을 한국어로 재출간할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재단은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모든 권리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한국어로 구성된 기준서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COPYRIGHT NOTIC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together with their accompanying documents are issued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5 IFRS Foundation

The IASB, the IFRS Foundation, the authors and the publishers do not accept responsibility for loss caused to any person who acts or refrains from acting in reliance on the material in this publication, whether such loss is caused by negligence or otherwise.

IFRSs (which includ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pretations) are copyrigh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Foundation. The authoritative text of IFRSs is that issued by the IASB in the English language. Copies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Please address publication and copyright matters to: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translated, reprinted or reproduced or utilised in any form either in whole or in part or by any electronic, mechanical or other means, now known or hereafter invented, including photocopying and recording, or in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prior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related material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has been approv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in Korea with the permission of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is the copyright of the IFRS Foundation. Copies of the Korean translation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or the KASB, KCCI Building 3rd Flr., 39 Sejong-daero, Jung-gu, Seoul, 04513, Korea.

Tel: +82 (0)2 6050 0150 Fax: +82 (0)2 6050 0170 Email: webmaster@kasb.or.kr

Web: www.kasb.or.kr

The IFRS Foundation has waived the right to assert its copyright in certain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such materials consist of all numbered, bar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in the form that they are issued or adopted by the IASB, or Interpretations issued by the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S IC) or 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S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sovereign consent and in connection with any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oduction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is permitted for any use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FRS Foundation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목 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따른 재작성 방법의 적용'

문단번호

참조

배경 1

적용 한2.1

회계논제 2

결론 3~5

시행일 6~한6.1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해석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 시된다.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 (IE1-IE6)

[결론도출근거]

IFRIC 12의 결론도출근거 (BC1-BC25)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따른 재작성 방법의 적용'은 문단 1~한6.1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용사례 및 결론도출근거로 구성되어 있다. 해석서의 적용범위와 효력은 '기업회계기준 전문'의 문단 24와 25에서 규정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따른 재작성 방법의 적용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배경

이 해석서는 기업의 기능통화가 사용되는 경제가 전기에는 초인 플레이션 상태가 아니었지만 보고기간에 초인플레이션 상태¹⁾가 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게 되 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을 제시한다.

적용

한2.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회계논제

2 이 해석서에서 다루고 있는 논제는 다음과 같다.

¹⁾ 초인플레이션 상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문단 3의 판단기준에 따라 식별한다.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를 적용할 때 이 기준서 문단 8의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한다'라는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
- (2)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때 기초 이연법인세 항목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여야 하는가?

결론

- 3 기능통화가 사용되는 경제가 전기까지는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아 니었으나 당기에 초인플레이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과거부터 계속되었던 것처럼 가정하고 기업 회계기준서 제1029호를 적용한다. 그러므로 역사적원가로 측정된 비화폐성 항목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포함된 가장 이른 기간 개 시초의 개시재무상태표는 재작성하여야 한다. 역사적원가로 측정 된 비화폐성 항목과 관련하여 자산은 취득한 날부터, 부채는 발생 하거나 인수한 날부터 보고기간 종료일까지의 인플레이션 영향을 반영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일이나 발생일이 아닌 날 현재의 금액으로 개시재무상태표에 표시된 비화폐성 항목의 경우 에는, 장부금액이 결정된 날부터 보고기간 종료일까지의 인플레이 션 영향을 반영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
- 4 보고기간 종료일에 이연법인세 항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한다. 그러나 보고기간의 개시재무상태표의 이연법인세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1) 보고기간 개시일에 그 날의 측정단위를 사용하여 비화폐성 항목의 명목장부금액을 재작성한 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측정한다.
 - (2) 위의 (1)에 따라 재측정한 이연법인세 항목은 보고기간 개시일 부터 보고기간 종료일까지의 측정단위의 변동을 반영하여 재 작성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를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재작성된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된 특정 기간의 개시재무상태표에서 이연법인세항목을 재작성할 때도 (1)과 (2)의 방법을 적용하다.

5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후 후속 보고기간에는 그 후속 보고기간에 일어난 측정단위의 변동을 이전 보고기간의 재작성된 재무제표에 만 적용하여 이연법인세 항목을 포함한 후속 보고기간 재무제표의 모든 대응수치를 재작성한다.

시행일

- 6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한6.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따른 재작성 방법의 적용'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 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따른 재작성 방법의 적용'의 적용사례

이 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IE1 이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재작성하는 경우, 이연법인 세 항목의 재작성을 예시하고 있다. 이 사례는 이연법인세 항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재작성접근법의 기법을 예시하는 것만 의도하였으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전체 재무제표를 예시하지는 않는다.

사실관계

IE2 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20X4년 12월 31일(재작성 전)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표	(단위	l: 백만원)
주석		20X4	20X3
1	자산 유형자산 기타자산	300 XXX	400 XXX
	자산총계	XXX	XXX
	자본과 부채 자본총계	XXX	XXX
	부채		

 2 이연법인세부채
 30
 20

 기타부채
 XXX
 XXX

 부채총계
 XXX
 XXX

 자본 및 부채총계
 XXX
 XXX

주석

1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모든 항목은 20X2년 12월에 취득하였습니다. 유형자산은 내용연수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2 이연법인세부채

20X4년 12월 31일에 30백만원인 이연법인세부채는 유형 자산의 장부금액 300백만원과 세무기준액 200백만원 사 이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따라 측정됩니다. 적용세율은 30%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20X3년 12월 31일에 20백만원인 이연법인 세부채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400백만원과 세무기준액 333백만원 사이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따라 측정됩니다.

IE3 예를 들어, 20X4년 4월에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을 식별하였고, 따라서 20X4년 기초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를 적용한다고 가정한다. 기업은 다음의 일반물가지수와 환산계수에 기초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일반물가지수	20X4년 12월 31일의
		환산계수
20X2년 12월 ⁽¹⁾	95	2.347
20X3년 12월	135	1.652
20X4년 12월	223	1.000
(1) 예를 들어, 20X2년 12월의 환산계수는 2.347 = (223/95)이다.		

재작성

IE4 20X4년의 재무제표는 다음 규정에 기초하여 재작성한다.

- 취득일부터 보고기간말까지의 일반물가지수 변동을 역사적원 가와 감가상각누계액에 적용하여 유형자산을 재작성한다.
- 이연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 비교표시된 이전 보고기간의 유형자산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 재의 측정단위로 표시한다.
- 비교표시된 이연법인세금액은 이 해석서의 문단 4에 따라 측 정하여야 한다.

IE5 따라서 20X4년 12월 31일의 재무상태표를 다음과 같이 재작성한다.

	재무상태표(재작성 후)	(단위	: 백만원)
주석		20X4	20X3
1	자산 유형자산	704	939
	기타자산	XXX	XXX
	자산총계	XXX	XXX

	자본과 부채		
	자본총계	XXX	XXX
	부채		
2	이연법인세부채	151	117
	기타부채	XXX	XXX
	부채총계	XXX	XXX
	자본 및 부채총계	XXX	XXX
	7)]		

주석

1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모든 항목은 20X2년 12월에 취득하였고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하였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취득이후의 일반물가의 변동, 즉 환산계수 2.347(223/95)을 반영하여 재작성합니다.

(단위: 백만원)역사적재작성금액후 금액5001 174

금액 유형자산의 원가 500 1,174 20X3년 감가상각비 (100)(235)20X3년 12월 31일의 장부금액 400 939 20X4년 감가상각비 (100)(235)20X4년 12월 31일의 장부금액 300 704

2 이연법인세부채

20X4년 12월 31일의 명목금액인 이연법인세부채 30백만원은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300백만원과 세무기준액 200백만원 사이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따라 측정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20X3년 12월 31일의 이연법인세부채 20백만원은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400백만원과 세무기준액 333백만원 사이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따라 측정됩니다. 적용세율은 30%입니다.

재작성된 재무제표상에서 보고기간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일반 규정에 따라, 즉 재작성된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측정합니다. 그러나 이연법인세 항목은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반물가지수를 적용하여 비교표시된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에 따라 재작성접근법을 적용하는 보고기간에 다음과 같이 재작성합니다.

- (1) 당해 보고기간의 재무상태표 개시일에 그 날의 측정 단위를 적용하여 비화폐성항목의 명목 장부금액을 재 작성한 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비교표 시되는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측정합니다.
- (2) 당기 재무상태표 개시일부터 보고기간말까지 측정단 위의 변동에 대하여 재측정된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작 성합니다.
- 이 사례에서 재작성된 이연법인세부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단위: 백만원)

보고기간말:

유형자산의 재작성된 장부금액(주석 1 참조) 704

세무기준액 (200)

일시적차이 504

20X4년 12월 31일의 재작성된

이연법인세부채(적용세율 30%) 151

비교표시된 이연법인세금액:

20X3년 12월 31일의 이연법인세부채	
20X4년 말의 일반물가수준으로 재작성된	
이연법인세부채(적용세율 30%)	71
20X3년 12월 31일의	
20X3년 말의 일반물가수준으로 재작성된	
일시적차이	235
세무기준액	(333)
· 939/1.652(환산계수 1.652 = 223/135)	568
·400 × 1.421(환산계수 1.421 = 135/95) 또는	
유형자산의 재작성된 장부금액	

- IE6 이 사례에서 재작성된 이연법인세부채는 20X3년 12월 31일부터 20X4년 12월 31일까지 34백만원 만큼 증가하여 151백만원이 된다. 이 증가는 20X4년 당기손익에 포함된 것으로서 다음 사항을 반영하다.
 - (1) 유형자산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변동 영향
 - (2) 유형자산의 세무기준액에 대한 구매력 상실 그 두 가지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단위	비: 백만원)
유형자산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감소로 인한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영향	
(-235 + 133) × 30% 20X4년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무기준액에 대한 손실	31
$(333 \times 1.652 - 333) \times 30\%$	(65)
이연법인세부채의 순증가	(34)
20X4년 당기손익 차변에 기입(당기손실)	34

세무기준액에 대한 손실은 화폐성 손실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9호 문단 28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순손익에 포함된다. 약정에 의하여 물가변동과 연동되어 있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문단 13에 따라 이루어진 조정금액은 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상계한다. 투자하거나 차입한 자금과 관련된 이자수익, 이자비용, 외환차이와 같은 다른 손익 항목도 순화폐성자산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항목은 별도로 공시되기는 하지만 포괄손익계산서에 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함께표시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하고자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IFRIC 7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 제정한 과정과 외부의견 등에 대한 논의내용 등을 기술한 것이다.
-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이용자를 위해 IASB가 작성한 문서이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원문을 번역하여 제공한다.
- 이 결론도출근거에 언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에 각각 대응되는 K-IFRS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대응표를 제시한다.

	국제회계기준	한국	구채택국제회계기준 -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
	International Financial		초채택
	Reporting Standards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Statements		
IAS 8	Accounting Policie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Changes in Accounting		오류
	Estimates and Errors		
IAS 12	Income Taxes	제1012호	법인세
IAS 21	The Effects of Changes in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Foreign Exchange Rates		
IAS 29	Financial Reporting in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
	Hyperinflationary		무보고
	Economies		
	Economies		1

IFRIC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따른 재작성 방법의 적용(Applying the Restatement Approach under IAS 29 Financial Reporting in Hyperinflationary Economies)'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IFRIC 7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 은 아니다.

이 결론도출근거의 용어는 2007년 개정된 IAS 1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되지는 않았다.

도입

BC1 IFRIC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 거에서 요약한다. IFRIC의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배경

- BC2 IFRIC은 IAS 29를 적용하기 시작하는 경우, 재무제표를 어떻게 재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요청받았다. 보고기간 개시일 이전의 물가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보고기간 개시일의 개시 대 차대조표를 재작성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 BC3 또한 기초 대차대조표에서 비교 이연법인세 항목의 측정방법도 명확하지 않았다. IAS 29는 대차대조표일에 재작성된 재무제표의 이연법인세 항목을 IAS 12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이연법인세금액의 회계처리방법은 명확하지 않았다.

BC4 이에 따라 IFRIC은 해석서 공개초안 제5호(D5) 'IAS 29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의 최초 적용(Applying IAS 29 Financial Reporting in Hyperinflationary Economies for the First Time)'을 마련하여 2004년 3월에 외부검토의견을 받기 위해 발표하였으며, 그 제안에 대한 응답으로 30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결론의 근거

재작성접근법

BC5 IFRIC은 D5를 마련하면서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 IAS 29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목적은 일반구매력의 변동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IAS 29의 문단 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고 영업 성과와 재무상태를 현지통화로 보고하는 것은 유용하지 아니 하다. 인플레이션율 만큼 화폐의 구매력이 저하되므로, 상이한 시점에 발생한 거래와 사건의 금액을 비교하는 것은 그러한 거래와 사건이 동일한 회계기간에 발생하였더라도 재무제표이 용자에게 오해를 유발한다.

이러한 목적은 기능통화 경제하에서 기업의 후속 보고기간 (초인 플레이션 경제에 대한 기준을 여전히 충족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을 식별하는 최초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도 적용된다.

BC6 IFRIC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IAS 29 문단 4의 의미를 고려하였다.

.....이 기준서는 표시통화가 사용되는 국가에서 초인플레이션 의 발생이 확인되는 보고기간의 개시일부터 재무제표에 적용 한다.

IFRIC은 이 규정이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이 확인되는 보고기간의 기초 대차대조표의 재작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부 대차대조표 항목을 보고기간 개시일 전에 취득하였거나 인수하였더라도, 기초 대차대조표는 보고기간 개시일 전의 일반물가지수의 변동이 아닌 보고기간의 일반물가지수의 변동만을 반영하기 위해 재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IFRIC은 또한 IAS 29 문단 34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역사적원가에 기초하든지 현행원가에 기초하든지 전기의 대응 수치는 비교재무제표를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할 수 있도록 일반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재작성한다. 전기 이전의 회계기간에 관하여 공시된 정보도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 위로 표시한다......[기울임꼴로 표시된 부분은 강조된 부분임]

BC7 IFRIC은 IAS 29 문단 4의 제한과 문단 34의 규정이 일관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IFRIC은 문단 4가 동 기준서를 준수해야하는 시점을 식별하는 적용범위 문단이라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문단은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을 확인한 날부터 만이 아니라 보고기간 개시일부터 대차대조표일까지 그 기준서의 규정을 재무제표에 적용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문단 4는 (대차대조표일에 또는비교금액과 관련한) 재무제표의 재작성과 표시는 다루지 않는다. 그러므로 IAS 29의 문단 4는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을 확인하는 보고기간 개시전의 일반물가수준의 변동에 따른 기초 대차대조표의 재작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BC8 IFRIC은 그 기준서 목적의 맥락에서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이 확인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 재작성은 후속 보고기간에 적용되는 재작성접근법과 일관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BC9 D5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 29의 재작성접근법을 재무제 표작성자가 실무적으로 항상 적용할 수 있는지와 이 재작성접근법이 재무제표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IFRIC은 이러한 우려를 이해하고 있었으나, 그러한 우려가 현행 기준서의 적용방법보다는 일반적으로 초인플레이션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더 광범위한 측면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았다.

BC10 그럼에도 불구하고 IFRIC은 예를 들어, 유형자산 항목의 취득일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이용가능하지 않는 경우, IAS 29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FRIC은 그러한 상황에서 IAS 29의 문단 16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였다.

......드물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에 재작성하기 위한 기초로서 해당 항목의 가치에 대 한 독립적 전문가의 평가액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IFRIC은 일반물가지수가 이용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유사한 면제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 29의 문단 17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기능통화와 비교적 안정적인 외화 사이의 환율변 동 등에 기초한 추정치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다.

BC11 IFRIC은 IASB가 IFRS 1을 마련하면서 IFRS 1에서 IFRS 최초채택 기업에게 최초 IFRS 재무제표의 재작성 영향을 면제해주어야 하

는지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주목하였다. IFRS 1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67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FRS 전환일보다 앞선 기간의 초인플레이션 효과를, 특히 해당 통화가 더 이상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원가는 효익을 초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IASB는 초인플레이션으로 무의미하고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조정되지 않은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작성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 BC12 그러나 IFRIC은 IFRS 최초채택기업이 예를 들어, 전환일에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투자부동산과 무형자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IFRS 전환일에 IAS 29를 적용해야 하는 최초채택기업이 IFRS 1의 공정가치 측정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정가치가 결정되는 날 이후의 기간에만 IAS 29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재측정은 최초채택기업의 재무제표 재작성 필요성을 줄일수 있을 것이다.
- BC13 IFRIC은 최초채택기업은 IFRS 1의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재측정의면제사용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위의 문단 BC10에서기술하는 바와 같이 IFRS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 재무제표작성자를 위한 일반적인 재작성접근법의 면제는 특정 상황에 한해서만적용된다는 데 주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FRIC은 그 기준서들에서 면제의 적용은 명확하며, 따라서 IAS 29에 따른 재작성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 이미 IFRS를 적용하는 재무제표작성자에게유형자산의 공정가치 재측정을 선택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IAS 29에서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해석서가 아닌 그 기준서자체의 개정이 필요한 것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BC14 또한 D5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안된 그절차가 IAS 21에 따른 기능통화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와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기능통화의 변경은 초인플레이션 상태로 이동하는 것에 상응하는 것이다. 더욱이 소급적용은 초인플레이션 상태의 변동을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는 US GAAP의 접근법과도 일관되지 않는다.

BC15 IFRIC은 기능통화 변경을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이 그와 같은 변경을 초래할 수 있다(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님)고 보았다. IFRIC은 기능통화의 변경이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통화의 변경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문단 BC5에서 명시하였듯이, 초인플레이션 영향을 재작성하는 목적은 기업의 기능통화 경제에서의 구매력 변동 영향을 반영하는 데 있다. 따라서 IFRIC은 초인플레이션에 대한 회계처리 적용이 기능통화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에 기초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BC16 또한 IFRIC은 US GAAP에 따른 전진적용에 대한 의견제출자의 언급은 초인플레이션 경제에 있는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에만 요 구사항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이 경우에 SFAS 52 '외화환산 (Foreign Currency Translation)'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당히 높은 인플레이션 경제에 있는 해외기업의 재무제표는 기능통화가 보고통화인 것으로 가정하여 재측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의 재무제표는 문단 10의 규정에 따라 보고통화로 재측정한다......[기울임꼴로 표시된 부분은 강조된 부분임]

따라서 US GAAP에서는 해외기업의 재무제표를 투자자의 기능통화로 재측정한다. IFRIC은 이 접근법이 IFRS에 따라 재작성하고

환산하는 접근법과는 다르다는 데 주목하였다. US GAAP은 초인 플레이션의 기능통화로 영업하는 보고기업에게 다른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APB 3 '일반물가 변동에 따라 재작성된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s Restated for General Price-Level Changes)'도 재작성접근법에 기초하며 IAS 29에서와 같이 소급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 IFRIC은 IFRS에 따라 서로 다른 표시통화로 된 금액의 비교표시 목적으로 IAS 21의 문단 42(2)와 문단 43을 적용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경우, 기업은 IAS 29에서 요구된 비교금액 재작성 요구에서 면제될 것이다. IAS 21의 문단 BC22는 특정 면제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만일 환율이 관련된 두 경제 사이의 물가수준의 차이를 완전하게 반영한다면 SIC 30의 방법을 따르면 과거의 재무제표에 당기금액으로 보고하였던 것과 동일한 금액이 비교표시하는 금액으로 나타날 것이다. 더욱이 IASB는 과거에 관련 금액이 초인플레이션 경제가 아닌 경제의 표시통화로 이미 표시되었고 그들을 수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17 D5는 IAS 29에 따른 재작성접근법의 적용을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닌 상황의 변경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D5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이 제안이 일관되지 않다고 믿었다. 이는 IAS 8 문단 16에서 상황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IAS 29를 소급적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IFRIC은 문단 BC5~BC16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IAS 29가이 논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다. IFRIC은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이 확인되는 보고기간의 기초 대차대조표는 IAS 29에 따라 재작성접근법을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재작성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IFRIC은 이러한 회계처리가 IAS 8에서 설명된 회계정책 변경의 소급적용과 유사하다는 스스로의 견해를 재확인하였다.

이연법인세 항목

- BC18 IFRIC은 IAS 29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이연법인세 항목의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을 요청받았다. 특히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이 확인되는 보고기간의 기초 대차대조표상의 이연법인세 항목의 측정에 대한 지침을 요청받았다.
- BC19 IFRIC은 IAS 29의 문단 32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기준서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대차대조표의 개별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IAS 12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보고기간의 대차대조표 종료일에 화폐성항목이나 비화폐성항목에 대한 일반적인 재작성 규정을 적용하기 보다는 재작성된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측정한다. 그러나 IFRIC은 비교표시되는 이연법인세 항목의 회계처리방법이 명확하지 않음에 주목하였다.

- BC20 IFRIC은 D5를 마련하면서 다음의 대안을 고려하였다.
 - (1) 화폐성항목으로서 이연법인세 항목의 재작성
 - (2) 비화폐성항목으로서 이연법인세 항목의 재작성
 - (3) 기업의 기능통화의 경제가 과거부터 계속 초인플레이션 상태 였던 것처럼 가정하여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측정
- BC21 D5에서는 이연법인세 항목이 사실상 화폐성항목도 비화폐성항목 도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이연법인세 항목이 자산(과 부채)의 관련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에 따라 결정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이러한 견해에 반대하였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본래 고정되거나 결정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수취되거나 지급되므로, IAS 21의 문단 8에 따라 화폐성항목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밖의 의견제출자들은 일반적인 실무관행에서 이연법인세를 비화폐성항목으로 분류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 BC22 IFRIC은 의견제출자의 검토의견을 고려하면서 위의 문단 BC17의 결론을 이연법인세 항목에도 적용하여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즉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을 확인하는 보고기간의 기초 대차대조표의 이연법인세 항목은 그 환경이 과거부터 계속 초인플레이션 상태였던 것처럼 가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즉 문단 BC20의 대안 (3)). IFRIC은 이연법인세 항목이 화폐성항목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였으나 기초이연법인세 항목을 화폐성항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법과 동일하게 재작성한다면 대안 (3)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 BC23 IFRIC은 D5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이 기초 대차대조표의 이연 법인세 항목은 보고기간의 대차대조표 종료일 현재의 측정단위로 기초 대차대조표를 재작성한 후에 재측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한 것을 주목하였다. IFRIC은 그 제안이 기초 대차대조표에 인식한 이연법인세 항목(이연법인세부채의 경우)을 과대표시함으로써 보고기간의 원가를 과소계상한다고 보았다. 이는 그 보고기간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세무기준액에 대한 손실을 기초 자본에 직접적으로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IFRIC은 다음을 사례로 예시한다.

첫 회계연도 말의 비화폐성 자산은 그 날 현재의 측정단위로 재작성한다. 재작성된 금액은 1,000원이며 그 세무기준액은 500원이다. 세율이 30%인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150원으로

재측정될 것이다. 만일 두 번째 회계연도에 인플레이션율이 100%이고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재작성된 재무제표에 자산 2,000원을 인식한다(보고기간의 대차대조표 종료일과 비교금액 모두). 대차대조표 종료일에이연법인세부채를 450원으로 재측정한다[(2,000원 - 500원) × 0.3]. 그러나 보고기간의 대차대조표 종료일 현재의 측정단위로 자산을 재작성한 후에 비교표시되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재측정한다면 기초 이연법인세부채는 450원을 인식하고 당기손 익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450원 - 450원). 반면에 D5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비교금액을 작성한다면, 재작성된 기초 이연법인세부채는 300원{[(1,000원 - 500원) × 0.3] × 100% + 150원}이될 것이다. 따라서 보고기간의 세무기준액에 대한 구매력 손실인 150원(450원 - 300원)을 손실로 인식하여야 한다.

BC24 IFRIC은 IAS 12 부록 A의 문단 18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였다.1)

비화폐성자산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재작성되나 (IAS 29 참조) 세무상으로는 동일하게 조정되지 않는다(참고: (1)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에 반영된다.2) (2) 만약 재작성될 뿐만 아니라 비화폐성자산이 재평가된다면, 재평가와 관련된 이연법인세는 자본3)에 반영하고 재작성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BC25 결과적으로 IFRIC은 비교표시되는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작성하기 위해 먼저 이전 보고기간말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일반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재작성된 전기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이연법

¹⁾ 문단 18은 IAS 1의 변경에 따라 개정되었다.

²⁾ IAS 1은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을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두 개의 보고서(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³⁾ IAS 1에 따라 그러한 영향은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다.

인세 항목을 재측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스스로의 결론을 확 인하였다. 두 번째로 그 계산된 이연법인세 항목을 보고기간의 일 반물가수준의 변동에 따라 재작성하여야 한다.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와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 제7호(IFRIC 7)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는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가 제정한 국제 재무보고기준해석 제7호(IFRIC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따른 재작성 방법의 적용(Applying the Restatement Approach under IAS 29 Financial Reporting in Hyperinflationary Economies)'에 대응하는 해석이다.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이 제한적으로 수정되었다.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대상기업과 적용시기를 명시하기 위하여 문단 한2.1과 한6.1이 추가되었으며, 적용시기 이후 최초채택기업으로서 이 해석서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시행일과 관련된 문단이 삭제되었다. 이러한 수정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동 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한 문단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에 '한'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구분표시하였다. 그리고 동 국제회계기준의 문단을 삭제한 경우는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 앞제한 경우는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 옆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이라고 표시하였다.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 제7호(IFRIC 7)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 2107호가 IFRIC 7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IFRIC 7을 준수하는 것이 된다.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이 해석서는 기업의 기능통화가 사용되는 경제가 전기에는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아니었지만 보고기간에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9호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게 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문단 8의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한다'의 해석

역사적원가로 측정된 비화폐성 항목과 관련하여 자산은 취득한 날부터, 부채는 발생하거나 인수한 날부터 보고기간 종료일까지의 인플레이션 영향을 반영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일이나 발생일이 아닌 날 현재의 금액으로 개시재무상태표에 표시된 비화폐성 항목의 경우에는 장부금액이 결정된 날부터 보고기간 종료일까지의 인플레이션 영향을 반영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때 기초 이연법인세 항목의 회계처리

보고기간말에 이연법인세 항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한다. 그러나 보고기간의 개시재무상태표의 이연법인세 금액은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1) 보고기간 개시일에 그 날의 측정단위를 사용하여 비화폐성항목의 명 목장부금액을 재작성한 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이연법 인세 항목을 재측정한다.
- (2) 위의 (1)에 따라 재측정한 이연법인세 항목은 보고기간 개시일로부터 보고기간 종료일까지의 측정단위의 변동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를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재작성된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된 특정 기간의 개시재무상태표에서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작성 할 때도 (1)과 (2)의 방법을 적용한다.

제ㆍ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해석 서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였다.

제·개정일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	l준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07.11.23.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	029호 IFRIC 7 Applying the
	'초인플레이션 경제	Restatement Approach under IAS 29 Financial Reporting in
	의 새누모고 에 따른 작성 방법의 적용	IAS 29 Financial Reporting in
	1001110	Hyperinflationary Economies